

1. 개정이유

「국가유산기본법」 일부개정으로 기존의 문화·자연·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·개편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자연유산위원회 명칭 변경 (안 제3조, 제5조)

- 자연유산(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)을 지정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명을 「국가유산기본법」 개정에 따라 “자연유산위원회”에서 “국가유산위원회”로 “시·도자연유산위원회”에서 “시·도유산위원회”로 그 명칭을 변경

나. 국가유산위원회 등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서식 정비 (별지 제3호 서식)

- [별지 제3호 서식]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의 지정요청서의 내용중 “시·도자연유산위원회”에서 “시·도유산위원회”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서식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관계부처 등과 협의 예정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, 특기할 사항 없음

자연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
자연유산 관련 분과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
2.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제1항·제2항에 따른 시·도유산위원회
(이하 “시·도유산위원회”라 한다)의 자연유산 관련 분과위원회 위원
또는 전문위원

제5조제2호 중 “시·도자연유산위원회”를 “시·도유산위원회”로 한다.

별지 제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의 지정 요청서

※ 작성 방법 및 첨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6쪽 중 제1쪽)

자연유산 구분	지정 종류		
	유형/종목		
대상 자연유산 현황	명칭	한글	한자
		영문	
	소재지		
	수량/크기 ※ 상세내용은 3쪽~5쪽 중 해당 쪽에 적습니다.	해당 자연유산	
		보호구역	
		보호물	
	현재 용도/기능		
	소유자(단체)	성명(명칭)	전화번호
		주소	
	연혁/유래/특징		
서식지/번식지/ 도래지/군락지/ 사육지			
관리단체(안)	단체명	대표자	
	선정사유		

지정 가치 및 지정 근거

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또는 제1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

직인

국가유산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. 천연기념물·명승 등 자연유산과 관련된 전문가의 조사 의견 및 시·도유산위원회의 심의 관계자료 3. 자연유산의 연혁·특징, 서식지·번식지·도래지·군락지·사육지, 지정 가치·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. 배치도·평면도·입면도·단면도 등 자연유산 도면자료 5. 자연유산에 대한 학술·고증자료 6. 항공·위성사진 등 자연유산 사진자료 7. 자연유산(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·시설물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포함한다)의 위치도, 지적도, 수치도,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8. 자연유산 보존·관리·활용계획 9.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0. 해당 자연유산 소유자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※ 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때에는 아래 작성 방법 및 첨부 유의사항 제12호의 첨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고, 첨부서류는 책자(컬러인쇄, 15부) 및 CD(1장)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작성 방법 및 첨부 유의사항

1. 지정 종류: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종류를 적습니다.
2. 유형/종목: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의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 또는 별표 2의 명승의 지정기준에 따라 적습니다. (예) 동물/동물군, 식물/노거수, 자연경관/산지
3. 명칭
 - 가. 자연유산의 성격·유형 등 그 대표성·상징성을 나타내거나 일반에 널리 알려진 명칭을 부여합니다.
 - 나. 순수한 고유 명칭만으로는 일반인이 해당 자연유산이나 소재 지역을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유 명칭 앞에 행정구역명 또는 고유한 지명을 병기합니다.
 - 다.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자연유산 지정 명칭의 부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.
4. 소재지
 - 가. 행정구역상의 소재지와 지번(地番)을 적습니다.
 - 나.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숫자가 앞선 지번이나 가장 핵심구역으로 판단되는 지번을 대표 지번으로 적고 그 뒤에 ‘외’ 또는 ‘등’ 을 붙입니다.
5. 수량/크기: 해당 자연유산(지정구역), 보호구역 및 보호물을 중, 서식지·번식지·도래지·군락지, 건축물, 구조물 등으로 구분해 그 성격에 맞게 수량(개체 수 등) 및 크기(면적 등)를 적습니다.
6. 현재 용도/기능: 현재 쓰이고 있는 용도, 기능 및 역할 등을 적습니다.
7. 소유자(단체): 해당 자연유산(지정구역)의 소유자(단체)의 성명(명칭) 및 주소를 적습니다.
8. 연혁/유래/특징
 - 가. 자연유산의 연혁, 유래 및 특징에 대해 중요 내용을 중심으로, 개조식(個條式)으로 간결하게 적습니다.
 - 나. 상세한 내용은 첨부서류(3. 자연유산의 연혁·특징, 서식지·번식지·도래지·군락지·사육지,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)에 적습니다.
9. 서식지/번식지/도래지/군락지/사육지
 - 가. 자연유산의 서식지, 번식지, 도래지, 군락지 또는 사육지에 대해 중요 내용을 중심으로, 개조식(個條式)으로 간결하게 적습니다.
 - 나. 상세한 내용은 첨부서류(3. 자연유산의 연혁·특징, 서식지·번식지·도래지·군락지·사육지,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)에 적습니다.
10. 관리단체(안):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에 따른 자연유산의 관리단체 지정에 대한 의견을 적습니다.
11. 지정 가치 및 지정 근거
 - 가.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,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지정기준에 비추어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간결하게 적고, 반드시 지정기준상의 근거 조항을 적시해야 합니다.
 - 1) 역사적·경관적·학술적 가치(중요한 고유성, 대표성, 희소성, 상징성, 자연미, 저명 인물 연관성 등)
 - 2) 세계유산 지정 여부 및 다른 유사 자연유산과의 차별적 특징 등
 - 나. 상세한 내용은 첨부서류(3. 자연유산의 연혁·특징, 서식지·번식지·도래지·군락지·사육지,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)에 적습니다.
12. 첨부 유의사항
 - 가. 첨부서류 제5호의 자연유산에 대한 학술·고증자료는 연구보고서, 조사보고서, 실측자료, 문헌자료, 옛 사진자료, 탁본자료 등을 말합니다.
 - 나. 첨부서류 제6호의 자연유산 사진자료는 항공 또는 위성사진, 원경, 근경, 전경, 세부현황 및 2,000×1,500 픽셀 이상의 디지털 파일을 말합니다.
 - 다. 첨부서류 제7호의 자연유산(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·시설물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포함한다)의 위치도, 지적도, 수치도,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은 각각 위치도, 지적도(축척 5백분의 1 이상 ~ 1천5백분의 1 이하), 수치도(축척 5천분의 1), 지형도(축척 5백분의 1 이상 ~ 1천5백분의 1 이하), 이미지파일 및 캐드 또는 셰이프(SHP)파일을 말합니다.
 - 라. 첨부서류 제10호의 해당 자연유산 소유자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해당 종의 경우에만 해당하며, 증여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증명자료, 구입한 경우 매매사본 등 정당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) ① (생 략)	제3조(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·도지 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자 연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 문위원	1.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2제 1항 및 제4항에 따른 국가유 산위원회의 자연유산 관련 분 과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
2.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시·도자연유산위원회(이하 “시·도자연유산위원회”라 한 다)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	2.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제 1항·제2항에 따른 시·도유산 위원회(이하 “시·도유산위원 회”라 한다)의 자연유산 관련 분과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 원
3. ~ 7. (생 략)	3. ~ 7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5조(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) 시·도지사는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지정해야 할 자 연유산이 있으면 영 제20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천연기 념물 또는 명승 등의 지정 요청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	제5조(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1. (생략) 2. 천연기념물·명승 등 자연유산과 관련된 전문가의 조사 의견 및 <u>시·도자연유산위원회</u> 심의 관계자료 3. ~ 10. (생략) 2. 천연기념물·명승 등 자연유산과 관련된 전문가의 조사 의견 및 <u>시·도자연유산위원회</u>의 심의 관계자료 2. ~ 11. (생략)	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 <u>시·도유산위원회</u> ---- ----- 3. ~ 10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 <u>시·도유산위원회</u> ----- ----- 2. ~ 11. (현행과 같음)
---	---